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803
----------	------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출자 : 하남시장

(가칭)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제출부서 : 체육진흥과

1. 제안이유

- 해당 부지는 열병합발전소(나래에너지서비스)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채납한 부지로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복합체육시설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됨.
- 하남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15년도 기준 15만여명의 인구가 23년 현재 33만여명으로 증가되었으며, 향후 50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증가한 인구대비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시급한 실정임.

2.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사업명 :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건립
- 사업위치 : 하남시 풍산동 52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01. ~ 2027. 02.
- 규모 : 부지면적 1,721㎡ / 연면적 6,300㎡(지상 4층, 지하2층)
- 총사업비 : 26,000백만원(공사비 22,867백만원, 설계비 등 3,1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이후
계	26,000	1,400	9,100	9,100	6,400
국비	-	-	-	-	-
시도비	-	-	-	-	-
시군구비	26,000	1,400	9,100	9,100	6,400

- 재원 : 시비 100% (일반회계)
- 기준가격
 - 건물 : 26,000백만원
 - 토지 : 기확보 (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부지)
- 주요 시설계획
 - 수영장(25m, 5레인),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놀이형체육시설, 다목적실, 편의시설, 지하주차장(지하1, 2층) 등
 - 건축기획용역 과정에서 세부 시설계획 확정 예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	26,000
공 사 비	건축 공사	○ 체육시설 : 16,680백만원 - 4,170천원/m ² × 연면적(4,000m ²) - 서울시, 2022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체육 시설 사례 참고 ○ 지하주차장 : 6,187백만원 - 2,690천원/m ² × 연면적(2,300m ²) - 서울시, 2022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체육 시설 사례 참고	22,867
	설계 감리	○ 설계비 : 1,137백만원 - 공사비(22,867백만원) × 4.9% - 산출근거 : 기재부 「2024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건축부 분요율」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 적용 해당요율 - 설계공모 부대비용 포함(16백만원) ○ 감리비 : 1,944백만원 - 공사비(22,867백만원) × 8.5% - 산출근거 : 기재부 「2024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전면책임 감리비 요율」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 적용 해당요율	3,081
	시설 부대비	○ 공사비(22,867백만원) × 0.23% ≒ 52백만원 - 산출근거 : 기재부 「2024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전면책임 감리비 요율」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 적용 해당요율	52

※ 토지 : 기 확보(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 부지)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2. 12. 나래에너지서비스 기부채납 부지 소유권 이전
- 2023. 01. 주민의견 수렴
- 2023. 02. 복합체육시설 사업계획 수립
- 2023. 06. ~ 1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
- 2023. 11. ~ 2024. 0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 2024. 02. ~ 2024. 04. 설계공모 추진(조달청)
- 2024. 05. ~ 2025. 03.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
- 2025. 04. ~ 2027. 02. 공사착공 및 준공
- 2027. 04. 복합체육시설 개관

□ 주관부서 검토의견

- 기부채납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2022년말 ~ 2023년초)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 확충이 최우선 순위로 조사됨에 따라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해당 지역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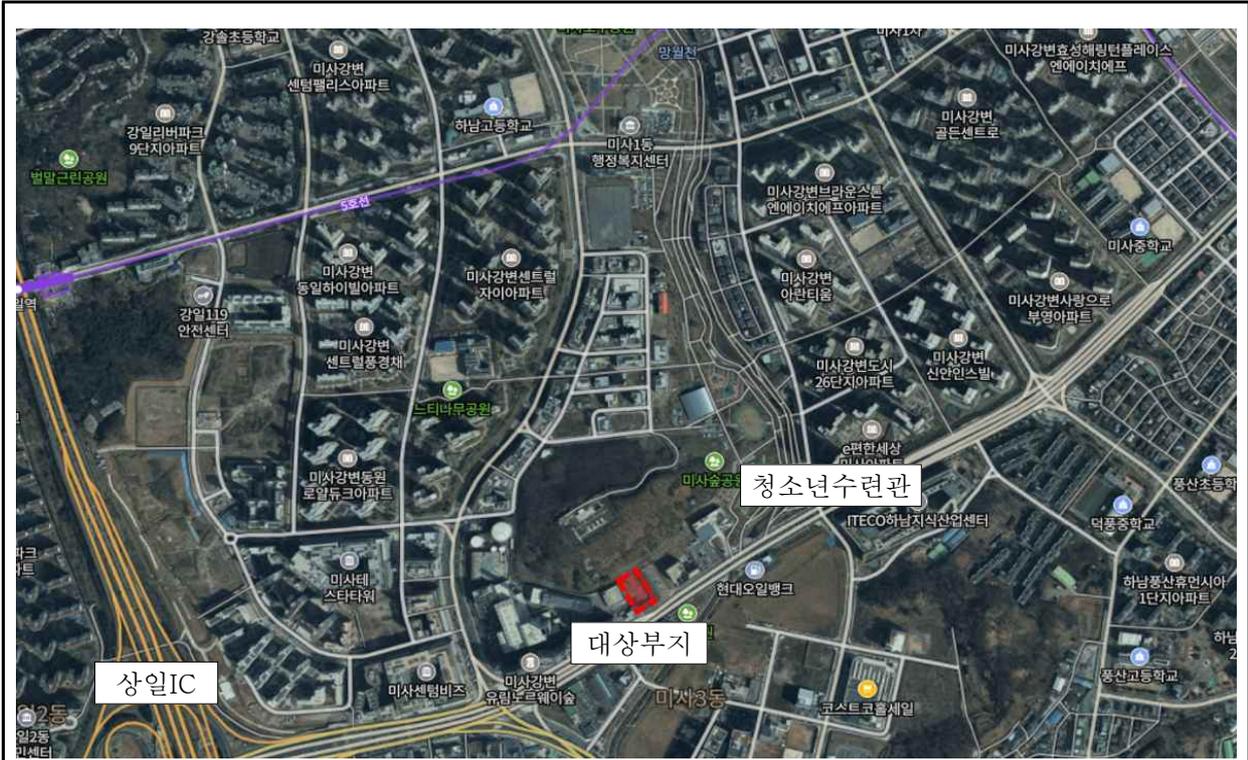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관계법령 1부.

1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사업명 :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29.>

- ③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6.2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사업

제출부서 : 체육진흥과

1. 제안이유

- 기존 노후 배드민턴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체 노후화 및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고 건물이 철거되었음. (2023.09. 철거 완료)
- 원도심 생활권의 실내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 개선 및 공공시설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창우배드민턴장 재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천현동, 신장1·2동 인구 : 약6만여명)

2.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사업명 : 창우배드민턴장 재건립
 - 사업위치 : 하남시 창우동 520-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규모 : 부지면적 600㎡ / 연면적 600㎡(지상 1층, 코트4면)
 - 총사업비 : 2,500백만원(공사비 2,130백만원, 설계비 등 3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4	2025	2025	2025이후
계	2,500	2,500	-	-	-
국비	-	-	-	-	-
시도비	-	-	-	-	-
시군구비	2,500	2,500	-	-	-
기타	-	-	-	-	-

○ 재원 : 시비 100% (일반회계)

○ 기준가격

- 건물 : 2,500백만원

- 토지 : 기확보(시유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금액
총계	-	2,500
공사비	○ 체육시설 : 2,130백만원 - 3,551천원/m ² × 연면적(600m ²) - 조달청, 공공건축물유형별 공사비 배드민턴장 사례참고 (동탄2배드민턴장 공사비단가, 공사비지수 적용)	2,130
	○ 설계비 : 111백만원 - 공사비(2,130백만원) × 5.19% - 산출근거 : 기재부 「2024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건축부분요율」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 적용 해당요율 ○ 감리비 : 251백만원 - 공사비(2,130백만원) × 11.8% - 산출근거 : 기재부 「2024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전면책임 감리비 요율」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 적용 해당요율	362
	○ 공사비(2,130백만원) × 0.36% ≒ 8백만원 - 산출근거 : 기재부 「2024 예산안편성 세부지침 건설부분요율」 공사비 대비 직선보간법 적용 해당요율	8

※ 토지 : 기확보(시유지)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3. 06. 시설정밀안전진단 시행(진단결과 : 즉시폐쇄)
- 2023. 08. 체육시설 이용자 간담회
- 2023. 09. 기존시설 철거완료
- 2024. 01. ~ 05.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 2024. 05. ~ 11.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2. 창우배드민턴장 개관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사업대상지 인근 신장동 및 천현동 생활권은 5만 9천여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실내생활체육시설은 다목적 체육관인 유니온파크체육관이 유일한 실정임
- 거주 인구대비 생활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배드민턴장 시설을 이용 중이던 주민의 시설 재건립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건립 시 많은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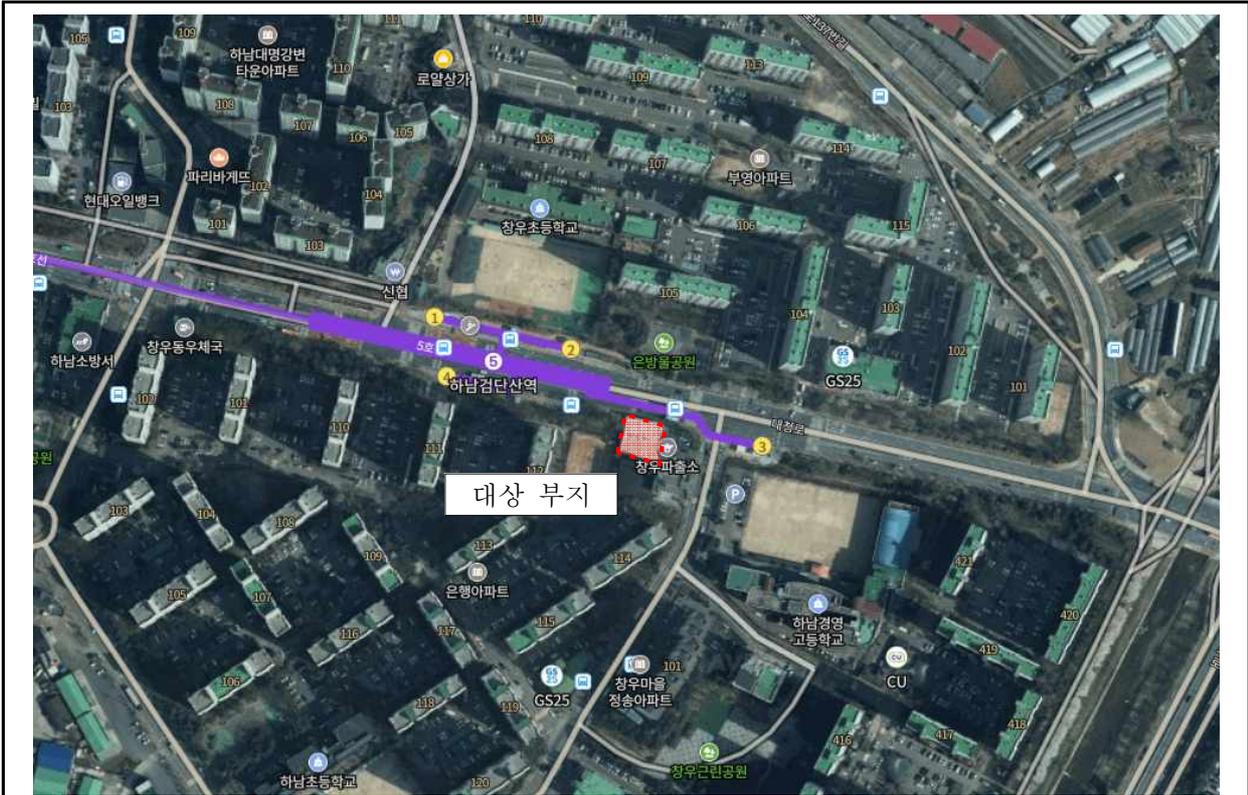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관계법령 1부.

1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사업명 : 창우배드민턴장 재건립 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29.>

- ③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6.2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감일·위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제출부서 : 교통정책과

1. 제안이유

- 감일·위례지구는 현재 인구 7만 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공공주택 건설 완료 등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수요가 예상되지만, 현재 회차지로 사용 중인 감일지구 교통광장(감일동 468)은 운행 중인 버스(5대 노선 52대) 회차시 수용(수용가능대수 10대)이 불가능하여 외부 도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감일·위례지구 운행 차량들의 버스 차고지가 없어 하남시 상산곡동, BRT차고지 이용으로 불필요한 공차 거리 증대로 버스 노선 운행횟수 감소, 첫·막차 시간 단축 불가, 배차간격 증대, 차량 주유를 위한 공차 운행 등 감일·위례 운행 버스 대수에 비해 버스 이용 서비스 질이 매우 떨어지고, 버스 신설 및 증차가 어려움
- 이에 감일·위례지구 버스차고지를 조성하여 감일·위례지구 입주민들에게 원활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2018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 ※ 현재 제4차 하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이며, 2023. 11월 수립예정

3.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사업명 : 감일·위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하남시 감이동 356-1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2027. 12.
- 규모 : 부지면적 4,465㎡ / 연면적 336㎡(지상 1층 및 세차동)
- 총사업비 : 11,380백만원(토지비 8,500백만원 공사비 1,770백만원 설계비 등 1,1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11,380	330	9,280	1,070	700
국비	-	-	-	-	-
시도비	-	-	-	-	-
시군구비	11,380	330	9,280	1,070	700
기타	-	-	-	-	-

- 재원 : 시비 100% (일반회계)
- 기준가격
 - 토지 : 8,500백만원(하남시 감이동 356-1번지 일원 매입 예정)
 - 건물 : 2,880백만원(토지보상비 제외 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	11,380
보 상 비	부지 매입	○ 조성원가(1,904천원/m ²) × 부지면적(4,465m ²) ≙ 8,500백만원 ※ 공시지가기준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8,500
공 사 비	건축 공사	○ 토목공사비 : 870백만원 - 125천 원/m ² × 4,500m ² × 물가상승률 = 870 ○ 조경공사비 : 130백만원 - 18천 원/m ² × 4,500m ² × 물가상승률 = 130 ○ 건축공사비 : 770백만원 - 1,667천 원/m ² × 340m ² × 물가상승률 = 770 ※ 산출근거 : 기존 BRT차고지 준공내역서(2023.10) 상 토목,조경, 건축공사비 원단위에 물가상승률(5.1%) 적용	1,770
	용역 비	○ GB관리계획 변경 용역 : 60백만원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 240백만원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170백만원 ※ 산출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부고시2020-635호)의 공사비요율방식 ○ 지형현황측량, 보험료 : 40백만원 ○ 재해영향평가 : 50백만원 ※ 산출근거 :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70백만원 ※ 유사사례 적용	630
	부 담 금	○ GB보전부담금 : 260백만원 (형질변경면적+ 바닥면적의 2배) × (평균지가-개별 공시지가) × 시설별부과율(20%) = 260백만원 ○ 농지보전부담금 : 220백만원 면적 × 기준단가 × 감면비율 = 220백만원	480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3. 09.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자체심사)
- 2023.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뢰
- 2023. 11. : 「하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수행
- 2023.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4. 02. : GB관리계획 변경 등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02. ~ 2025. 11. : GB 관리계획 변경
- 2025. 12. ~ 2026. 03.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 2026. 01.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원 사업 제출(시→도)
- 2026. 04. ~ 2026. 06. : 실시계획 인가
- 2026. 06. ~ 2026. 12. : 토지 보상 및 취득
- 2027. 01.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경기도심사)
- 2027. 01. ~ 2027. 02. : 계약심사 및 공사업체 선정
- 2027. 03. ~ 2027.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주관부서 검토의견

- 감일·위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시 현재 부족한 회차 공간으로 외부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해소
- 버스 노선 기점 인근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버스 노선 운행횟수 증가, 배차간격 및 첫·막차 시간 단축, 전기버스 투입 가능, 감일·위례 버스노선 신설 등 버스 이용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
- 이에 감일·위례지구 버스차고지를 조성하여 감일·위례지구 입주민들에 원활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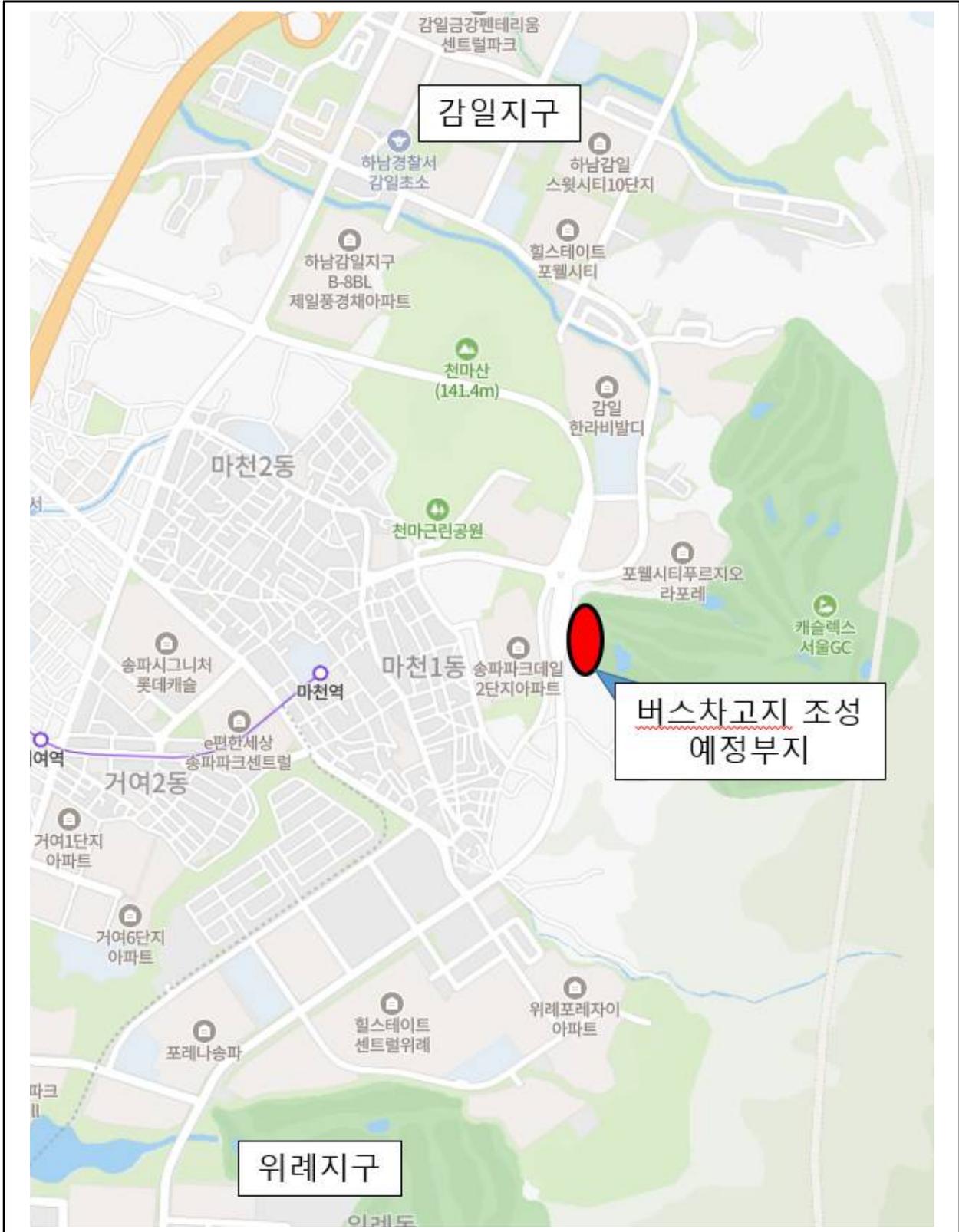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관계법령 1부.

1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 장 사 진

사업명 : 감일·위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사업명 : 감일 · 위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29.>

- ③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6.2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 토지매입

제출부서 : 공원녹지과

1. 제안이유

- 덕풍골 등산로 주이용 대상자는 노인 등 보행취약자이나 기존 계단은 경사(60% 이상)가 급하여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됨
- 또한 해당 노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인근 거주 학생들이 다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시설 설치 등 진입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사업명 :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 토지매입
 - 위치 : 덕풍동 산38-13번지
 - 규모 : 1필지 1,037㎡(지목 : 임야)
 -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2.
 - 소요예산 : 금300백만원
 - 재원 : 시비 100% (일반회계)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3. 06. 경사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12. 공유재산 심의
- 2024. 01. 덕풍동 산38-13번지 토지 협의 매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사업대상지는 급경사지로 시민들이 이용시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경사로 개선 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실정으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관계법령 1부.

1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 사진



2

관련 법령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29.>

- ③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6.2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2	5,502	8,800	-	-	-	2	5,502	8,800	
		건물	3	7,236	31,380	-	-	-	3	7,236	31,380	
		기타	-	-	-	-	-	-	-	-	-	
	1. 매 입	토지	2	5,502	8,800	-	-	-	2	5,502	8,800	
		건물	3	7,236	31,380	-	-	-	3	7,236	31,380	
		기타	-	-	-	-	-	-	-	-	-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타취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7. 기타처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	-	-	-	-	-	-	-	-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²,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시기 (준공계획)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수량 (면적)				
1	건물	풍산동 526-1 일원	잡	6,300	26,000	2027.02.	(가칭)황산복합 체육시설 건립	
2	건물	창우동 520-2	대	600	2,500	2024.12.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	
3	토지	감이동 356-1 일원	답	4,465	8,500	2027.12.	감일위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	건물	감이동 356-1 일원	답	336	2,880	2027.12.	감일위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	토지	덕풍동 산38-13	임	1,037	300	2024.01.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	